

동

향

일본 우정사업 특별회계의 구조와
1992년도 예산(안) 개요
비정규인력의 확대활용을 통한
우체국 업무개선 방안
우주로부터 날아드는 우체국 정보
우편물 증가에 대응한 업무효율화 정책에
대하여
우편영업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판매체제

일본 우정사업특별회계의 구조와 1992년도 예산(案) 개요

우정대신관방 경리부 주계과

1. 우정사업특별회계의 구조

가. 특색

우정사업특별회계는 우정사업을 기업적 방식으로 경영하여,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의 일반회계로부터 독립하여 경리하는 회계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다.

(1) 합리성과 경제성을 확보한다.

우정사업은 국민과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적정한 요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는 책무를 안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스스로 경영책임은 지는 기업적 경영방식이 요망되고 있다.

(2)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독립하여 경리를 한다.(獨立採算制度)

우정사업특별회계는 스스로 얻는 수입을 지출에 충당하는 독립채산제도 하에 운영되는 것이며, 세수(稅收)를 재원으로 하여 세출에 충당하는 일반회계와는 제도면에서 상위(相違)하다.

을 하나의 기업으로서 일체화하여 경영하기 위해 우편저금사업과 간이생명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취급비나 영선비(局舎, 기계기구 등의 정비)를 각기의 특별회계로부터 繰入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각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 사업이 적절하게 분담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1992년도 예산(안)은 [그림 1] 및 <표 1>에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즉 우정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① 업무수입 ② 수탁업무수입 ③ 잡수입 ④ 설비부담금 ⑤ 차입금 ⑥ 업무의 수입으로 성립된다.

① 업무수입(18,842억엔).....우편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입(18,144억엔), 우편환, 우편대체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입(698억엔)을 계상(計上)

② 수탁업무수입(15,648억엔).....우편저금특별회계에서 받는 수입(우편저금사업의 사무취급비(8,693억엔), 간이생명보험특별회계에서 받는 수입[간이보험사업의 사무취급비(6,551억엔)] 및 NTT, NHK,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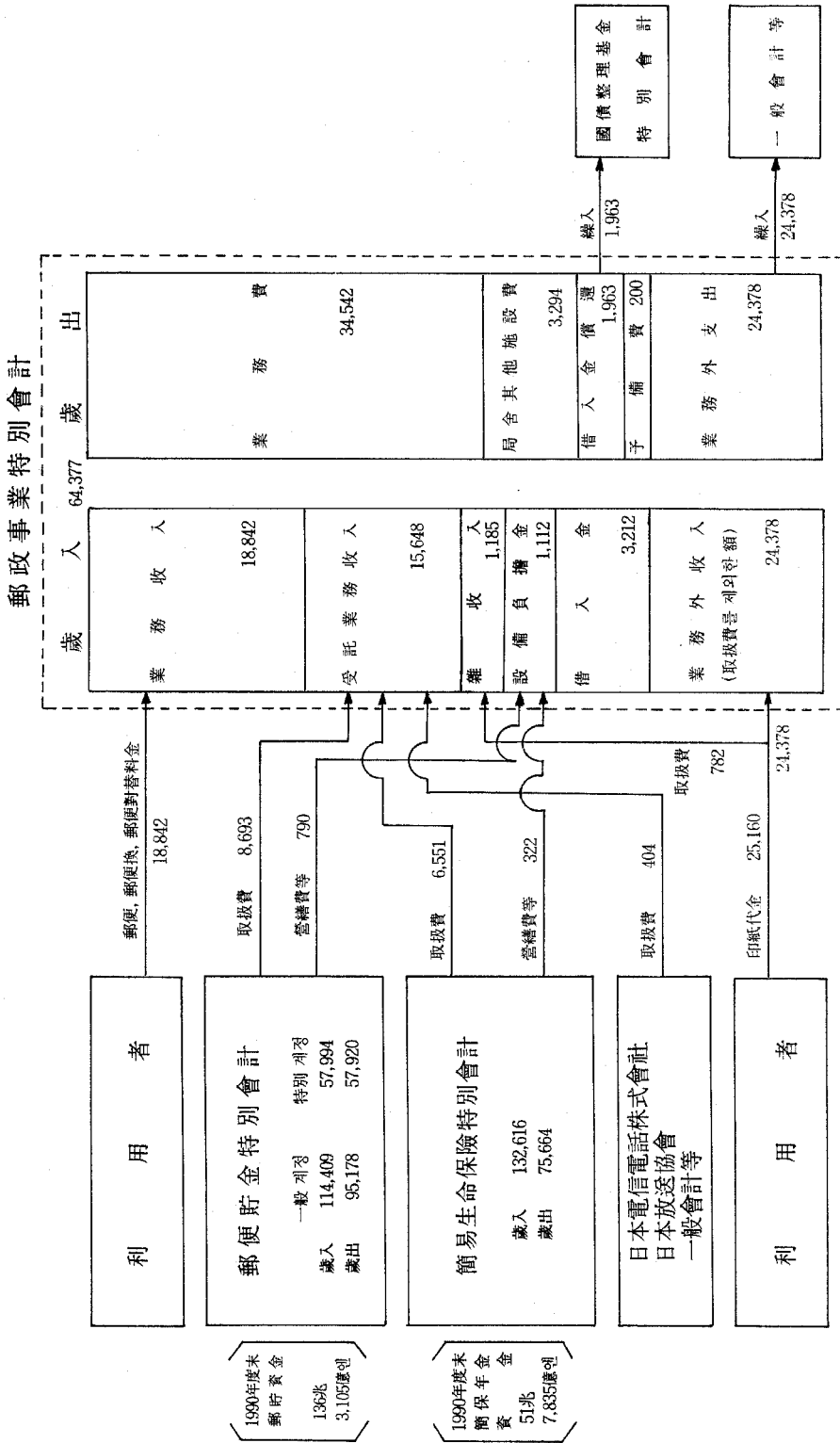
1. 우정사업특별회계의 구조

나. 구조

우정사업특별회계에서는 우정3사업

[그림 1] 1992年度 郵政事業特別會計予算定額의 概要

(單位:億圓)



〈丑 1〉 1992年度 郵政事業特別會計處入處出 予定額

區 別	1992年度 予 定 額	1991年度 予 算 額	對 1991年度比較	
			增減額	增減率
	億엔	億엔	億엔	%
(歲 入)				
(款) 業 務 收 入	35,675	33,241	2,434	7.3
(項) 業 務 收 入	18,842	17,574	1,268	7.2
郵便業務收入	18,144	16,933	1,211	7.2
환대체業務收入	698	641	57	8.8
(項) 受託業務收入	15,648	14,429	1,219	8.4
(項) 雜 收 入	1,185	1,238	△ 53	△ 4.2
(款) 資 本 收 入	4,324	3,149	1,175	37.3
(項) 借 入 金	3,212	2,214	998	45.1
建 設 財 源	789	657	132	20.1
業 務 運 營 費 財 源	2,423	1,557	866	55.6
(中當該年度分)	(892)	(387)	(505)	-
(項) 設 備 負 担 金	1,112	935	177	18.9
小 計	39,999	36,390	3,609	9.9
(款) 業 務 外 收 入	24,378	28,261	△ 3,883	△ 13.7
歲 入 合 計	64,377	64,651	△ 274	△ 0.4
(歲 出)				
(項) 業 務 費	34,542	31,742	2,800	8.8
人 件 費	24,049	22,610	1,439	6.4
物 件 費	10,493	9,132	1,361	14.9
(項) 局 舍 其 他 施 設 費	3,294	2,623	671	25.6
俸 結 事 務 費	67	62	5	9.0
機 械 器 具 整 備 費	927	1,007	△ 80	△ 7.9
施 設 費	2,300	1,554	746	48.0
(項) 借 入 金 償 還	1,963	1,539	424	27.5
建 設 財 源 償 還	432	369	0	0
業 務 運 營 費 財 源 償 還	1,531	1,170	361	30.9
(項) 予 備 費	200	200	0	0
(項) 給 與 改 善 豫 備 費	-	286	△ 286	△ 100.0
小 計	39,999	36,390	3,609	9.9
(項) 業 務 外 支 出	24,378	28,261	△ 3,883	△ 13.7
歲 出 合 計	64,377	64,651	△ 274	△ 0.4

된 업무의 취급으로 받는 수입(404억엔)을 계상.

- ③ 잡수입(1,185억엔)……전기(前記)한 수입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수입인지 등의 취급수입, 부동산매각대금, 병원 등의 수입을 계상.
- ④ 설비부담금(1,112억엔)……局舎, 기계기구 등을 정비하기 위해 우편저금(790억엔), 간이보험사업(322억엔)이 분담하는 경비의 수입을 계상.
- ⑤ 차입금(3,212억엔)……국사, 기계기구 등의 정비에 필요한 재원 및 우정업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을 계상.
- ⑥ 업무의 수입(24,378억엔)……수입인지, 자동차중량세인지등 6개 인지의 수입을 계상.

세출은 ① 업무비 ② 국사등 기타 시설비 ③ 차입금상환 ④ 예비비 ⑤ 업무의 지출 등으로 성립되어 있다.

- ① 업무비(34,542억엔)……우편사업, 저금사업 및 간이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를 계상.
- ② 국사등 기타 시설비(3,294억엔)……국사, 기계기구 등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
- ③ 차입금상환(1,963억엔)……차입금의 상환을 위한 경비를 계상.
- ④ 예비비(200억엔)……예견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 ⑤ 업무의 지출(24,378억엔)……수입인지등 6개 인지수입의 당해소관

회계(當該所管會計)에의 繰入, 업무의 수입과 업무의 지출의 금액은 동액(同額), 그리고 수입인지등 6개 인지의 취급수수료는 잡수입에 계상.

92년도 예산(안)의 우정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정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274억엔(0.4%)이 감소되어 6조 4,377억엔으로 되어있다. 이와같이 감소된 이유는 이른바 거품경제의 붕괴 등의 영향에 의해 수입인지등 6개 인지의 수입으로 구성되는 업무의 수입·지출이 개산요구 2조 8,280억엔에서 3,920억엔 감소하여 2조 4,378억엔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인지수입등 타회계에 전입시키는 업무의 수입·지출을 제외한 우정사업의 실질적인 예산예정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3,609억엔(9.9%) 증가하여 3조 9,999억엔으로 되어있다. 이는 9.9% 신장된 것으로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신장율로 되어있다.

다. 예산의 집행

다음은 예산의 집행상 인정되고 있는 제도에 대하여 1992년도 예산(안)을 예로 들어 간결하게 설명한 것이다.

(1) 예산의 移用·流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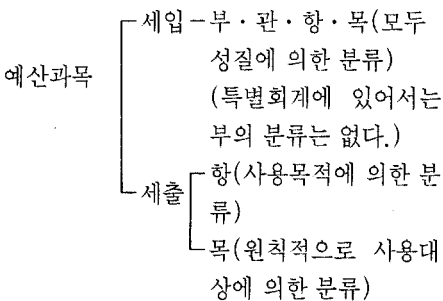
예산과목(予算科目)이란, 예산에 계상되고 있는 금액의 내용을 표시하는 사항에 대한 명칭이다. 세입에 있어서는 부(部), 관(款), 항(項) 및 목(目)으로 되어있고, 세출에 있어서는 항 및 목으로 되어있다.

우정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의 항(項)

은 업무비, 국사 기타 시설비, 차입금상환, 예비비, 업무의 지출이다. (項)업무비 중에는 직원의 기본급, 직원수당, 초과근무수당, 업무여비, 수품비, 도급비 등 30개의 목이 있다. 그리고 항의 국사 기타 시설비 중에는 시설비, 기계기구정비비, 수품비등 12개의 목이 있다. 各省各廳의 長은 이와같은 예산과목의 各항에서 정하는 목적 이외의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예산편성후 사정변경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移用」, 「流用」이 인정되고 있다. 「이용」은 사전에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며, 대장대신(大藏大臣)의 승인을 거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정특별회계, 우편저금특별회계 및 간이보험특별회계의 경우 매년도 특별회계예산총칙에서 各항 경비 금액을 해당 各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용」은 各항에서 정하는 목적의 범위안에서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장대신의 승인을 거쳐 행할 수가 있다.

(주1) 예산과목



(주2) 1992년도 특별회계예산 예산총칙 제

15조(예산의 이용)

「財政法」 제3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各 특별회계에서 이용(移用)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표~제3표까지에 나타난 各항 경비의 금액을 해당 各항 사이에서 상호 이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1표 특별회계(계정구분이 있는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各 계정) 各 항 사이의 이용

특별회계	이용할 수 있는 항
우정사업, 우편저금, 간이생명보험외 12회계	各 항

이하(생략)

(주3) 「移用」: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당초 예산대로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各항의 금액을 타의 조직 또는 타의 항에 옮겨서 사용하는 것.

(주4) 「流用」: 동일 항에 속하는 各목(各目)간에 상호사용하는 것.

(주5) 「예산총칙」: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의 형식은 재정법에 의해 정해져 있고,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甲號), 계속비(乙號), 繰越明許費(丙號), 국고채무부담행위(丁號)라는 5개 부분으로 성립되어 있다. 예산총칙이란 예산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을 정한 것이며, 그 내용은 매년도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기초적 사항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얻어 두는 형식을 가진다.

(2) 탄력조항

탄력조항이란 특별회계중 우정사업 특별회계와 같은 기업회계 등에서 사업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예산에 비해 증가했을 때, 수입과 관련이 되는 지출의 증가를 피하는 방법이다. 예산작성 후의 사정변경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용, 유용, 예비비 및 보정(補正)예산이 있으나 우정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이밖에도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예산의 원활한 운용을 꾀하기 위한 관점에서 탄력조항이라는 방법이 설정되어 있다.

탄력조항의 법적근거는 재정법 제22조 제6호에 의해 특별회계의 예산총칙

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탄력조항의 발동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회의 사후승인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주) 1992년도 특별회계예산 예산총칙 제14조(세입 세출 예산의 탄력조항)

다음 표의 좌란에 표시된 각 특별회계에 있어, 중간에 표시되어 있는 사유로 인해 수입금액이 예산액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각각 우란에 표시하는 경비를 증액할 수가 있다.

특별회계	요건	경비
우정사업	업무의 수입 이외의 수입의 증가	당해수입에 대응하는 업무에 직접 필요한 경비
	업무의 수입의 증가	업무의 지출에 필요한 경비
우편저금	일반계정에 있어서의 우편저금 수입액의 증가 등에 수반한 수입의 증가	일반계정에 있어서 우편저금의 이자 또는 우정사업 특별회계에의 조입에 필요한 경비
	금융자유화대책 특별계정에 있어서의 운용 수입의 증가	금융자유화대책 특별계정에 있어서 국제정리기금 특별회계에의 조입에 필요한 경비
간이생명보험	계약자의 증가 등에 의한 보험료 수입의 증가	보험금, 연금 또는 우정사업 특별회계에의 조입에 필요한 경비

(3) 업적상여

업적상여란 우정사업특별회계에서 직원의 능률향상에 의한 기업경영의 개선으로 인하여 수입이 예정보다 증가하였거나 경비를 예정보다 절감하였을 때, 대장대신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 금액을 특별한 급여로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업적상여는 특별회계예산 총칙에서 정하는 「특별급여의 지출」이 그 근거로 되어 있다. 1991년도에는 업적상여로서 0.4개월분이 지급된 바 있다.

(주) 1992년도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13조 (특별급여의 지출)

前條에 규정하는 것 외에 조폐국, 인쇄국,

국유임야사업 및 우정사업의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 직원의 능률향상에 의한 기업경영의 개선에 의하여 수입이 예정보다 증가하거나 또는 경비를 예정보다 절감하였을 때에는 대장대신의 승인을 얻어 그 수입의 증가 또는 경비의 절감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1992년도에 급여준칙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한 특별 급여의 지출에 충당할 수 있다.

2(생략)

(4) 예비비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세출예산의 부족을 보충하는 경비다. 1992년도 예산(안)에서는 200억엔을 계상하고 있다. 예비비의 구체적인 세출내용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일반회계, 우편저금 특별회계 및 간이실험특별회계에 있어서는 閣議에서 예비비의 사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정특별회계의 경우는 우정특별회계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우정대신이 그 사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 1992년도 예산(안)의 개요

우정사업특별회계의 구조에 대해 설명했는데 다음에는 1992년도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신규 중요시책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1992년도 예산의 정부원안(政府原案)은 작년 12월 28일의 概算閣議에서 결정되어 금년 1월 24일에 제123회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우편사업

(1) 우편물의 증가와 이용자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요원의 확보

근년 우편물은 급격히 증가하여 특히 대도시 인근 지역의 우편물 증가가 현저해 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 급증하는 우편물을 적절히 처리하여 이용자의 요청에 정확히 부응하기 위해 우편사업의 정원은 759명의 순증(純增), 임금은 전년도에 비해 41.3% 증가한 872억円이 인정되었다.

(2)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보네트워크시스템의

구축

급증하는 우편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량접수우편물의 계획적 처리에 이바지하는 다량접수정보시스템이나, AI기능을 이용하여 배차, 요원계획 등을 행하는 우편사업관리시스템 등의 정보네트워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경비가 인정되었다.

(3) 광고부착 우편엽서(재생지)를 이용한 환경보전사업 등에의 기부

우편의 이용을 통하여 지구환경보전사업 등에의 지원을 하기 위해 광고부착우편엽서를 재생지로써 조제하는 동시에 구입자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기부금 4엔, 엽서대 36엔), 지구환경보전사업 등에의 기부에 충당시키는 제도를 창립하도록 하는 것을 인정받았다.

(4) 제3종 우편물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치

제3종 우편물의 인가를 받은 정기간행물에 대한 심사사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3종 우편물의 인가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조사사무의 일부에 대해 우정대신이 지정하는 자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도록 하는 것을 인정받았다. 또한 사회복지의 증진에 일층 더 공헌하기 위해 일본적십자사등 사회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일정한 법인 또는 단체 앞으로의 기부금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의 요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을 인정받았다.

나. 우편저금사업

(1) 금융자유화대책자금 신규운용액

의 확보

1987년도에 창설된 금융자유화대책자금은 1991년도로써 5년째를 맞이하였다. 그 운용액이 1991년 말에는 15조엔으로 될 예정이고 1992년도 이후의 신규 운용액은 미정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편저금이 금융자유화에 적극적이고

정확히 대응하여 건전한 사업경영을 확보하면서 개인금융의 충실과 재정투융자에의 원자공급(原資供給)이라는 사명을 적절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 금융자유화대책자금을 1992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신규운용액의 합계액으로 합계 24.5조엔을 확보했다(<표 2> 참조)

<표 2> 金融自由化對策資金의 新規運用額

(단위 : 兆엔)

年 度	1987	1987~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新 規 運 用 額	2.0	前年度新規運用額에 5,000億엔을 加算	4.0	4.75	4.75	5.0	5.0	5.0
運 用 額	2.0	4.5~11.0	15.0	19.75	24.5	29.5	34.5	39.5

(2) 예탁운용의 충실

예탁운용 충실화의 일환으로, 금융자유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금리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경영상의 리스크(risk)를 경감하기 위해, 금융자유화대책자금의 국채인수폭을 편의활용하여 일정액의 할인단기국채(TB)의 인수(1992년도 인수액은 5,000억엔)를 당면한 試行的 조치로서 실시할 것을 인정받았다.

(3) 금융자유화대책자금 운용대상의 다양화

금융자유화대책자금의 운용대상 다양화의 일환으로 현재 공익업종에 대하여는 자본금 40억엔 이상의 회사 등에 대하여 자본금 60억엔 이상의 上場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한정되고 있었던 운용 범위를 어느것이나 순자산 15억엔 이상의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까지 확대하도록 인정받았다.

(4) 상품·서비스의 다양화

우체국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도모하

고 국가공무원 급여불입 업무를 추진하는 동시에 나라의 급여지불 사무의 합리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 우체국에서 국가공무원의 급여불입 업무를 취급하도록 인정받았다.

예금자의 일시적인 자금요구에 대응하여 계획적인 자금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우편저금예금자 대부한도액을 현행 200만엔에서 300만엔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것을 인정받았다. 이는 1987년 5월에 대부한도액을 100만엔에서 200만엔으로 인상한 이래 5년만에 제도개정이 된것이다.

다. 간이보험사업

(1) 특약제도(特約制度)의 개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기본이 되는 건강분야의 보장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특약의 다양화, 특약 이용범위의 개정 등이 인정되었다. 특약의 다양화란 현행은 재해사망이나 입원 등의 보장을 포함한

정형화된 방식의 특약이지만, 각종 특약을 설정해서 가입자의 보장요청에 부응하여 조합되어진 것에 의한 가입(선택 방식)이 임의로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특약의 이용범위의 개정이란, 현행은 재해사망이나 입원 등의 전부(全部)의 보장을 합해서 1,000만엔까지가 이용한계이지만, 입원보장의 특약에 있어서는 별도의 한도를 두어 1,000만엔까지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정기보험제도의 개선

청장년층에의 보급 촉진과 직장에서의 보장을 가일층 충실하게 하기 위해 현행의 정기보험제도를 개선하여 보험기간의 자동갱신제도 도입이 인정되었다.

(3) 간이보험적립금 운용대상의 다양화

금융자유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공익업종에 대하여는 자본금 40억엔 이상인 회사, 기타에 대하여는 자본금 60억엔 이상의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한정되었던 운용범위를 어느 것이나 순자산 15억엔 이상의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라. 3사업공통

(1) 우정사업 운영기반의 정비·충실

① 인재(人材)의 안정적인 확보와 인적(人的)기반 강화의 추진

인재의 안정적인 확보와 인적기반 강화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숙사, 식당시설의 개선등 복리후생시설의

정비충실, 비상근직원의 처우개선 등에 의한 비상근직원 확보의 추진, 직원의 육성·활력 향상책 등이 인정되었다.

② 사업운영 거점으로서의 우체국사의 정비와 기계화·시스템화의 추진

우정사업서비스의 향상과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우체국사의 정비, 기계화, 시스템화의 추진을 위해 정비가 전년도에 비해 25.6% 증가한 3,294억엔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과거 10년 동안에 최고의 신장율이다.

③ 대도시 특정우체국의 환경정비

대도시에 소재하는 무집배특정우체국의 환경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개개 우체국의 개성있는 局情에 알맞는 물품의 배달·비치가 새로이 인정되었고 1992년도는 162局을 대상으로 하여 10억 2,100만엔이 인정되었다.

(2) 지역의 정보거점으로서의 우체국 네트워크의 고도화 추진

사업운영의 고도화·효율화를 꾀하는 동시에 지역의 정보화 추진에 공헌하기 위해 우체국 위성통신네트워크(P-SAT)를 현재의 41국에서 276국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 普推連(보통우체국업무추진연락회) 간사국, 부간사국의 숲우체국에 위성통신 수신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P-SAT를 이용한 업무연락, 연수회의 개최등 사업운영의 고도화, 효율화가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4국에 하이비전방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인정되었다.

(3) 우정사업의 국제화에의 대응과
국제사회에의 공헌

우정사업의 국제화에의 대응과 국제
사회에의 공헌을 도모하기 위해 우정관
계 국제정보에 관한 수집체제의 충실,
우정사업에 관한 二國間 우정정기협의

의 개최, 개발도상국의 우정사업 관계직
원 수용의 확충, 외화환전, 여행자 수표
업무취급국의 확대(100국에서 200국으
로 확대), 국제블런티어 활동에의 지원
등이 인정되었다.

(「우정연구」, 92.4)